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40
----------	-----

2025. 4. 30.(수)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조성태 의원 등 7인
- 나.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- 다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- 라. 상정일자 : 2025년 4월 22일
 -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조성태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인용법령의 오기를 정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인용법령의 법령 오기를 정정(안 제8조, 안 제10조, 안 제12조)
 - 「충청북도 건축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건축 조례」
 -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
변상조례」

-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○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정(안 제8조)

-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→ 충청북도건축위원회

○ 운영상 미비점 보완(안 제10조, 안 제14조)

- 공무원이 아닌 사람 삭제

-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→ 충청북도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○ 본 조례안은 인용 법령의 명확한 표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안 제8조, 안 제10조, 안 제12조 등에서 인용된 관련 법령의 명칭을 정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이번 개정조례안은 「충청북도 건축 조례」,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,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인용 법령의 명칭을 정확히 반영하고, ‘충청북도 건축위원회’ 등 일부 용어에 대한 띄어쓰기 정정을 통해 명확성을 제고하였음.

○ 또한, ‘공무원이 아닌 사람’과 같은 중복 표현을 삭제하고, 위원회 명칭을 ‘충청북도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’로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조례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건축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건축 조례」”로 하고,
“충청북도 건축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건축위원회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”를 “위원에”로 “「충청북도
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로
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및”을 삭제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”를 “「충청북도 지방
보조금 관리 조례」에”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)”를 “(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)”로 하
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 건축디자인조
정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(생략)	제8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「충청북도 건축조례」 제3조에 따라 설치된 <u>충청북도 건축위원회</u> 에서 대행한다.	② ----- 「 <u>충청북도 건축 조례</u> 」 ----- ----- <u>충청북도건축위원회</u> -----.
제10조(수당 등) ① 위원회에 출석한 <u>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</u>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 <u>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</u> 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10조(수당 등) ① ----- -- <u>위원에</u> ----- ----- 「 <u>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</u> 」----- ----- -----.
② <u>제1항</u> 및 제9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2조(재정지원 및 감독) ① (생략)	제12조(재정지원 및 감독) ① (현

략)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·정산·감독 등은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따른다.

제14조(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)

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두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----.

제14조(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) ①

충청북도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

-----.